

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· 경제부 · 사회부
발 신 경제민주주의21
일 시 2020. 11. 13. (총 2쪽)
문 의 전화 | 010-3060-1917 이메일 | econdemos21@protonmail.com
제 목 [논평 23호] 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,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

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,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

- 추미애 장관, 수사 관여 목적의 검찰권 남발로 직권 남용 다반사
-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강제화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
- 헌법 제66조 제2항의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문 대통령, 해임 결단해야
- 문 대통령이 해임 않는 경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해야

1.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과 의사결정이 위법함의 수준을 넘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민주 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유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. 그동안 추 장관은 수차례 검찰청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해 왔다. 이에 더해 추 장관은 지난 2020.11.12.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하여 “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” (<https://bit.ly/2ImLqmB>) 고 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“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” 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 제정을 지시했다. 경제민주주의21(대표: 김경율 회계사)는 ▲추 장관의 계속된 위법행위와 작금에 드러난 위헌적 업무추진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며 ▲헌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▲만일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국회는 즉각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.

2. 그동안 경제민주주의²¹은 검찰청법,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, 법무부 감찰규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하며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. 그러나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, 최근에는 추 장관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발상을 주저 없이 드러내며 위헌적 업무를 추진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.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,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일반적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이다.

3.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“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” 고 하여 형사상 방어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. 이를 수호할 근본적인 책무는 대통령이 진다. 헌법 제66조 제2항은 “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”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부담하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위헌적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.

4. 만일 문 대통령이 그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알팍한 정파적 고려에 따라 추 장관의 해임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가 나서야 한다. 헌법 제65조 제1항은 “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·헌법재판소 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감사원장·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”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추 장관은 이제 법률 위반의 사법적 잘못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, 헌법을 유린하여 우리나라 민주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. 경제민주주의²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라는 추상같은 헌법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, 국회가 이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. 끝.